

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.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30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6. 10. 1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고병득 공보전산과장)

□ 제안이유

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·강화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 중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」의 10개 조례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별지서식(15건)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, 성별’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, 제7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6. 8. 3.~ 8. 23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제외 대상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광식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1990호)이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

-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강서구 조례의 별지서식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, 성별’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」의 10개 조례, 15건임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,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

-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,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되므로
 -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별 각 소관 부서에서의 자체 정비 실적이 미흡하여 일괄 개정을 한다지만 법률 시행일이 2014년 8월 7일 임을 감안할 때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보여짐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